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시설관리 담당

제목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보도자료 배포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19.7.2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보도자료 1부. 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사원 설문철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9 - 302호 (2019. 8. 2)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13층(만리동1가, SKY1004빌딩)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비공개

<b>보 도 자 료</b>			
 <b>한국환경공단</b> <small>Korea Environment Corporation</small>		<b>보도일시</b> 2019년 <b>7월 23일</b> <b>조간</b> (7. 22. 12:00 이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담당 부서</b>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유재형 부장 / 문준오 대리 032-590-5611 / 5617	
<b>배포일시</b>		2019. 7. 19. / 총 7매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한국환경공단, 기업·지자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보조금 지급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지자체로 확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 평가 및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 2015년부터 8개 업체, 18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23개 업체 30억 원, 2017년 3개 업체 3억 원, 지난해 총 4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 부문별 관장기관 운영체제로 개편(2016년 6월)되어 2017년부터 지원예산 감소
  -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8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됐다.
    -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 수정: 25.7% → 32.5%

-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지난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참여 사업자 모집으로 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사업자는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컨설팅)비 등으로 건물공사비, 철거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지원범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등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8월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창신프라자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7)로 문의하면 된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유재형 부장(☎ 032-590-5611), 문준오 대리(☎ 032-590-56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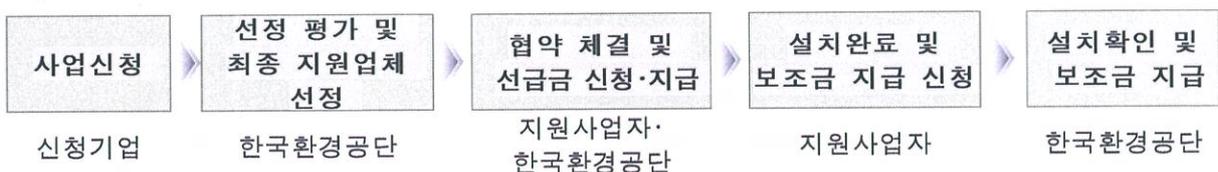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 지급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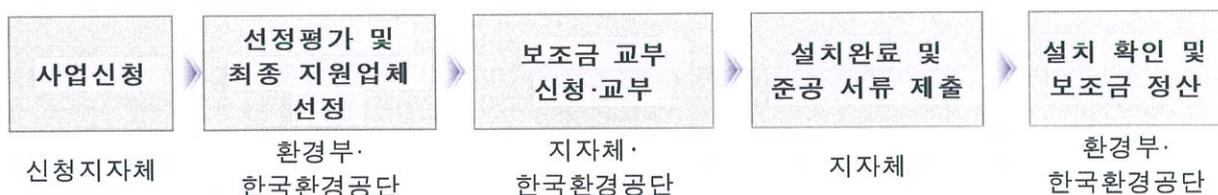
-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19년 예산 : 41억 원(자치단체보조 28.2억원, 중소·중견기업 12.93억 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참여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
  -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
    - \*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
  - (지원규모)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사업장별 최대 3억원)
  - (선정기준)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60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 (사후관리) 설치 후 3년간 감축실적 및 관리상태 확인

□ **사업 절차**

○ (중소·중견기업)



○ (지 자 체)



□ 지원대상 감축설비

- 폐열 회수 설비 :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를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 사용되는 공기 사용량에 맞게 압축공기의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무부하(Unloading) 때 발생하는 전력 절감
- 인버터 : 전기적으로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로, 공급된 전력을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시켜 공급함으로써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 폐기물 전처리 설비 :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불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 효율을 높이는 장치
- 축열식 버너 : 버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축열한 다음 연소 때 축열된 열로 공기를 가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

**1.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현황은 ?**

□ 배출권거래제(폐기물 및 공공·기타부문) 참여 중인 업체는 총 74개

<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 현황('19.7.1 변경고시 기준) >

구분	업체 수
중소기업	18개사
중견기업	5개사
공공기관	2개사
지자체	49개사

\*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한 이유는?**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18.7)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지자체 등)의 선도적인 감축이 요구

\* 국내 부문별 BAU 대비 감축률 : 25.7% → 32.5%

- 이에,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기존) 중소기업 → ('19년) 지자체 등 공공부문 추가

### 3. 사업자 선정 기준은?

- (평가 기준)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6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평가 방법)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1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

\*\* 위원회의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

□ **배출권거래제**

-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

□ **녹색인증기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기술